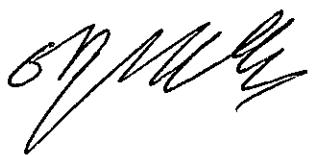


서울 속으로 한발 더!  
시민 결으로 한뼘 더!

## 의원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의장



2018. 6.

서울특별시의회  
(의사담당관)

# 의원 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## □ 접수의안

연번 (의안번호)	의안명	주요 내용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비고 (발의일)
1 (2537)	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	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시설의 지역별 신설 및 확충과 민간부문의 문화시설 투자 장려 등의 개선 등이 필요함. -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,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에 노력하도록 규정함(안 제43조) -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장려하고 지원을 노력하도록 규정함(안 제44조) - 기부채납 대상 문화시설을 조성·운영하는 영리법인 및 개인에 화해 대부요율을 비영리법인의 경우로 규정함(안 제45조)	김기만 의원 외 1명 (찬성 8명) (문화체육관광)	2018. 6.11.

## □ 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각 1부. 끝

